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
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보건정책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74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 제명의 개정 및 용어의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“음주청정지역”과 “음주청정구역”을 같은 용어로 정비(안 제3조 제1항)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인용조문을 변경(안 제3조 제1항 제2호)

4. 관계법령

-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제1호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이 「학교보건법」에서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(2016.02.03.)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조례 내 “음주청정구역”을 “음주청정지역”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6. 29.] [법률 제18636호, 2021. 12. 28., 일부개정]

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(이하 “학교경계등”이라 한다)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1. 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(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)
2. 상대보호구역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
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·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설정·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1.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(移轉)하게 된 때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
2.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
3.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

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